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11 월 2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 표 이 사 :	이 준 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18층(청진동, 그랑서울빌딩)
	(전 화)02-2158-7400
	(홈페이지)http://shalpharei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신한리츠운용(주) 대표 이사 (성 명)남궁 훈
	(전 화) 02-2158-74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524,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8,106,123
	기타주식 (주)	4,000,00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6,24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50,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5,260	확정예정일	2019.01.16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8년 12월 17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2499335867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9년 01월 21일		
		종료일	2019년 01월 22일		
12. 납입일			2019년 01월 29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10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02월 14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9년 02월 15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신한금융투자(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신한금융투자(주), 한국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11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12월 17일) 전 제3거래일(2018년 12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그 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보통주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2019년 01월 21일) 전 제3거래일(2019년 01월 16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5%를 적용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시행일 2013년 08월 29일 이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 2항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3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3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70%]

2)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12월 17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 중 우선주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499335867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가.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다.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 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한다.

가.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의 각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 에 대하여 각 개별적으로 산정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 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 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다.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미청약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에 대한 조건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라. 단, 대표주관회사는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 이하(액면가 1,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3)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를 위한 청약기간 : 2019년 01월 21일 ~ 2019년 01월 22일 (2일간)

(2) 일반청약자를 위한 청약기간 : 2019년 01월 24일 ~ 2019년 01월 25일 (2일간)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2019년 01월 07일 ~ 2019년 01월 11일(5영업일)
(4)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8년 12월 18일로부터 2018년 12월 26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된 인수계약서 체결 및 발행조건(일정, 발행주식 수 등)의 변경 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결의 사항을 정정할 예정이며 정정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공시할 계획입니다.